

의안번호	2200617
의 퇴 인	김영배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계번호	24B109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제2항 (녹색건축물의 확대)	-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야 하고, <u>이를 평가·공개하여야 함</u> ※ 현행은 목표 설정·관리 의무만 있는데 평가·공개를 추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제2항 (녹색건축물의 확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 및 평가(안 제31조제2항)

- 개정안은 정부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·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목표 관리에 대한 평가·공개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, 평가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 규정에 따라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 설정·관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

은 대통령령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¹⁾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 대상인 연면적 500㎡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여 약 20만 동 이상으로 추정되며, 각 건축물의 상황이 달라 건축물마다 에너지사용량의 제측 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단가를 산출하기 어려워, 개정안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[표 1]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장기 및 기간별 목표 설정·관리 대상 건물

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
2.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
3.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
- 3의2.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
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
5.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

자료: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

- 참고로,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는 각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대상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, 환경부의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804개 공공기관('23년 기준)이고, 국토교통부의 목표관리제 대상은 63개 업체('24년 기준)임
- － [참고자료 1]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
- － [참고자료 2]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대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

1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30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"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(환경부)

- (개요)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 점검·관리('11년~)
- (근거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6조(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) 및 시행령 제17조
 -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”에서 규정
- (대상기관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교육청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공단, 국·공립대학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및 자발적 참여기관*
 - *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자발적으로 목표설정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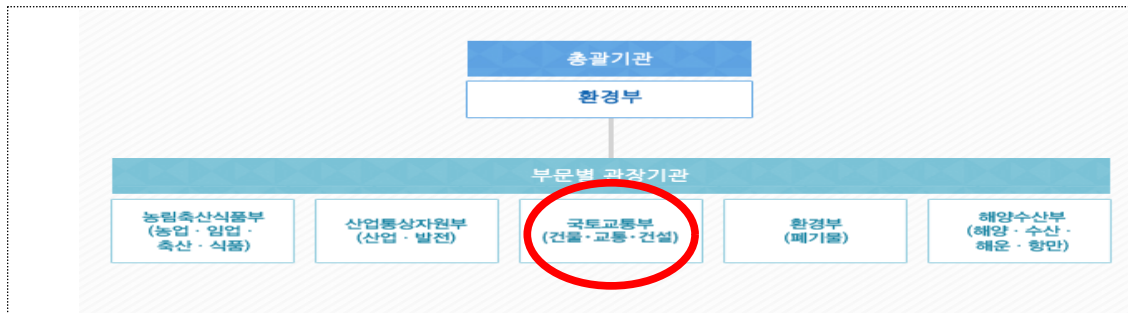
< 공공부문 유형별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현황('23년)>

구분	계	중앙 행정기관	지방 자치단체	시·도 교육청	공공기관	지방공사 ·공단	국·공립 대학	한국 은행	금융 감독원	헌법 기관
대상기관	804	46	243	17	314	145	33	1	1	4

- (대상시설)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(21,398개소) 및 차량(14,993개)('23년 기준)
- (운영절차) 감축목표* 설정 및 이행실적 제출(기관) → 이행실적 검토·보고 (환경부), 개선명령 및 개선계획 제출(환경부↔기관)
 - * 기준배출량('18년) 대비 '30년까지 37.4% 이상 감축하도록 매년 감축목표 설정
- (예산) 기후대응기금 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('24년, 10억)

[참고자료 2]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목표관리제도 (국토교통부)

- (개요)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는 협의를 통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



- (법적근거)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27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, 제21조 등
- (대상)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(업체 내 사업장)를 선정하여 목표설정, 이행계획 수립, 실적평가를 통해 관리(`10년~)
 - 3년 평균 배출량 업체 기준 50,000tCO₂eq 또는 업체 내 사업장 기준 15,000tCO₂eq 이상일 경우 목표관리업체('23년 55곳)로 지정
 - * 업체 기준 125,000tCO₂eq 이상 또는 업체 내 사업장 기준 25,000tCO₂eq 이상인 경우 배출권거래제(환경부)로 이관
 - ** 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업무위탁
- (절차) 업체 지정 후 목표설정, 이행 및 이행실적 평가 등 4개년 단위로 관리되며, 차년도 관리업체로 재지정될 경우 같은 과정 반복

《 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('23년 기준) 》

구분	Y년	Y+1년	Y+2년	Y+3년
내용	관리업체 지정	목표설정 등	목표이행	이행실적 평가
년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